

서울특별시 동대문패션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36
------	------

2012년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2년 9월 25일
- 다. 상정결과 :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년 10월 5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가. 제안이유

- 동대문수출지원센터 운영 및 해외 바이어 대상 수출상담회 개최 등 동대문패션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동대문수출지원센터(구 서울패션센터) 등
 - 동대문수출지원센터, 정보자료실, 세미나실, 아트홀
- 소재지 : 중구 신당동 251-7 유어스빌딩(U:US) 4층, 5층
- 시설규모 : 건물 3,440㎡(4층 1,619㎡, 5층 아트홀 1,821㎡)
- 준공일자 : 2006. 9. 21
- 이용대상 : 동대문상권 방문 바이어, 관광객 및 동대문 상인 등 패션관계자
- 주요기능
 - 수출지원센터 : 내외국인 구매·알선 지원, 통번역 지원, 수출상담회 개최 등
 - 정보자료실 : 패션관련 잡지, 도서 등 열람, 정보제공 등
 - 아트홀·세미나실 : 패션관련 행사 개최, 교육·간담회 등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1년(2013. 3 ~ 2014. 2)
- 주요업무
 - 동대문수출지원센터, 정보자료실 운영
 - 아트홀, 세미나실 대관 등 운영
 - 인바운드 수출상담회(패션큐브) 개최
 -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홈페이지 운영
 - 동대문 상인대상 교육 등 동대문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소요예산 : 530백만원(2012년)
945백만원(2013년 예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 2012 동대문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문화산업과-211, 2012. 1. 6)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00.8.8 ~ 2003.8.7(3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2차 : 2003.8.8 ~ 2006.8.7(3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3차 : 2006.8.8 ~ 2009.8.7(3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4차 : 2009.8.8 ~ 2011.12.31(2년5개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2012. 3. 7 ~ 2013. 2. 28(한국패션협회)

※ 동대문수출지원센터 운영은 2006년 시작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동대문패션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동대문 방문 바이어와 상인들을 위해 통·번역을 지원하고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대문상권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동대문수출지원센터와 정보자료실, 세미나실, 아트홀 등 관련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
- 동대문을 방문하는 주요 바이어인 중국(중국어), 일본(일본어), 싱가포르(영어) 등의 언어전문성과 동대문도매상권의 야간 운영시스템, 특수한 수출관행 등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므로 이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용훈)

- 본 동의안은 동대문수출지원센터 운영 및 해외 바이어 대상 수출상담회 개최 등 동대문패션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사안임.
-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동대문 방문 바이어와 상인들을 위해 통·번역을 지원하고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대문상권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동대문수출지원센터와 정보자료실, 세미나실, 아트홀 등 관련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무로,

그 사무의 성격이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및 제4호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하며

동대문을 방문하는 주요 바이어인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국가별 언어전문성과 동대문도매상권의 야간 운영시스템, 특수한 수출관행 등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이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동대문패션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 2010년 15억 8천1백만원, 2011년 11억원, 2012년 5억 3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2013년에도 9억 4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임.
- 최근 동대문이 서울의 주요 관광지로 인식되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아시아 쇼핑의 중심지로 재부상하고 있으나,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업체들의 부도나 잠적이 빈번하여 수출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해외 바이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출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패션관련 잡지와 도서 등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자료실과 각종 교육, 행사,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는 세미나실과 아트홀 등 관련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요구가 있으므로 내실있는 운영으로 동대문상권의 역량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중장기적인 성격의 사업임에도 1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2014년 3월 개관 예정인 DDP와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향후 격변이 예상되는 동대문상권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동대문패션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구조

2012년 예산 : 530백만원

구 분	항 목	소요예산
동대문수출지원센터 · 정보자료실	- 인건비 및 시설운영 관리비 등	200백만원
	- 미니바잉쇼(3~4회)	170백만원
	- 정보자료실 운영 등	30백만원
Fashion Cube (트레이드 쇼)	- 해외바이어 유치 관련	100백만원
	- 전시회 부스 및 진행 관련	30백만원

동대동패션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2011년 실적

구분	수출지원센터 운영	구 분	미니바잉쇼(3회)	패션큐브(1회)
내방객	약 28,000명	참가업체	80개사	96개사
거래알선	600건	참가바이어	369명	324명
기타	중국상인대상 동대문상권 홍보 13회	상담액	14,972백만원	22,475백만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언제까지 민간영역인 패션산업에 서울시가 개입할 예정인가.

답변 :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민간 위주이지 공공부문의 역할은 많지 않음.
관주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민간이 아직 준비가 부족
하여 보호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음. 좀더 심도깊게 논의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동대문패션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036
----------	------

제출년월일 : 2012년 9월 2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패션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동대문수출지원센터 운영 등 동대문패션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동대문수출지원센터 등(구 서울패션센터)
 - 동대문수출지원센터, 정보자료실, 세미나실, 아트홀
- 소재지 : 중구 신당동 251-7 유어스빌딩(U:US) 4층, 5층
- 시설규모 : 건물 3,440㎡(4층 1,619㎡, 5층 아트홀 1,821㎡)
- 준공일자 : 2006. 9. 21
- 이용대상 : 동대문상권 방문 바이어, 관광객 및 동대문 상인 등 패션관계자
- 주요기능
 - 수출지원센터 : 내외국인 구매·알선 지원, 통번역 지원, 수출상담회 개최 등
 - 정보자료실 : 패션관련 잡지, 도서 등 열람, 정보제공 등
 - 아트홀·세미나실 : 패션관련 행사 개최, 교육·간담회 등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1년(2013. 3 ~ 2014. 2)
- 주요업무
 - 동대문수출지원센터, 정보자료실 운영
 - 아트홀, 세미나실 대관 등 운영
 - 인바운드 수출상담회(패션큐브) 개최
 -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홈페이지 운영
 - 동대문 상인대상 교육 등 동대문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소요예산 : 530,000천원(2012)
945,000천원(2013 예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 2012 동대문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문화산업과-211, 2012. 1. 6)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00.8.8 ~ 2003.8.7(3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2차 : 2003.8.8 ~ 2006.8.7(3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3차 : 2006.8.8 ~ 2009.8.7(3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4차 : 2009.8.8 ~ 2011.12.31(2년5개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2012. 3. 7 ~ 2013. 2. 28(한국패션협회)
 - ※ 동대문수출지원센터 운영은 2006년 시작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동대문수출지원센터는 동대문방문 바이어와 상인들을 위해 통번역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주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동대문상권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관련시설(아트홀, 세미나실)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
-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사무가 아니며 동대문을 방문하는 주요 바이어인 중국(중국어), 일본(일본어), 싱가포르(영어) 등의 언어전문성과 동대문 패션상권에 대한 축적된 지식이 필요함
- 또한, 동대문 도매상권의 운영시간에 맞추어 야간(16:00~24:00) 운영시스템, 동대문상권의 특수한 수출관행 등에 따라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 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건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개정 2009.07.3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29)